

의안번호	2200231
의 퇴 인	한병도의원
회 답 일	2024. 6. 14.
추 계 번호	24D055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및 제21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부터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까지	-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하게 제21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 제22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의 대상으로 함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및 제21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부터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까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2조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¹⁾²⁾에 대하여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확충,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등 시책을 추진(제21조³⁾)하고,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제22조⁴⁾)을 하며, 수도권에 해당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제23조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를 추가하고,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하게 현행법 제21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 제22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수를 예측하기 어렵고⁶⁾,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추진될 시책의 내용,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모,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수 등

1) 현행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를,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③ (생략)

2) [참고 1] 인구감소지역 현황

3) 현행법 제21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확충,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현행법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5) 현행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⑥ (생략)

6) 다만,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9호)에 ‘관심지역’ 18곳([참고 2] 인구감소관심지역 현황)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이와 유사하게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한예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한예슬	02-6788-4831	yeseulhan@nabo.go.kr

[참고 1] 인구감소지역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참고 2] 인구감소관심지역 현황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중구
경기도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김천시
경상남도	사천시 통영시

자료: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9호)